

## 타액 시료를 이용한 지속성 테오필린 제제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심창구<sup>†</sup> · 권혁노

이창기\* · 한익수\* · 최광식\*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국립보건안전연구원

(1989년 11월 15일 접수)

## Bioequivalence Test of Slow-Release Theophylline Dosage Forms Using Saliva Samples

Chang-Koo Shim<sup>†</sup>, Hyeok-Lo Kwon

Chang-Ki Lee\*, Ik-Soo Han\* and Kwang-Sik Choi\*

College of Pharm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National Institute of Safety Research, Seoul 122-020, Korea

(Received November 15, 1989)

Bioequivalence test of Asthcontin<sup>®</sup> tablet, a commercial slow-release theophylline (TP) dosage form, was performed using Slo-bid<sup>®</sup> capsule as the reference. Since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saliva concentration of TP is closely correlated with the plasma concentration in man, the area under the saliva concentration-time curve was used as a bioavailability parameter. The statistical analysis showed that the two dosage forms are equivalent in bioavailability estimating from the saliva concentration. The results supported that the use of saliva as a test sample provides simple and easy techniques for bioequivalence tests of TP-containing dosage forms.

**Keywords**—Bioequivalence test, theophylline, saliva samples.

기관지 확장제로 쓰이고 있는 테오필린은 사람에게 있어서 혈장 중 농도와 타액 중 농도 사이에 일정한 상관성이 있음이 밝혀져 왔다<sup>1-3)</sup>. 박 등<sup>4)</sup>은 국내에서 건강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혈장 중 농도와 타액 중 농도간의 상관성을 확인하였으며, 저자 등<sup>5)</sup>은 사람에게 있어서 타액 중 농도로부터 구한 약물속도론적 파라메타가 혈장 중 농도로부터 구한 그것과 잘 일치함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테오필린의 체내동태를 연구하거나, 테오필린 제제의 생물학적 이용률 측정 및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등에, 시료로서 혈장 대신보다 채취가 간편하

고 처리가 용이한 타액을 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타액을 시료로 써서 테오필린 제제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모델을 제공하고, 타액 중 농도정량에 의한 테오필린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실험방법

### 재료 및 기기

<sup>†</sup>본 논문에 관한 문의는 이 저자에게로.

**Table I—Dosing Schedule to Volunteers.**

Group	Subject	Period	
		I	II
1	1) KSH, 2) YHS, 3) YYH,	A	B
	4) LKH, 5) CYJ		
2	6) KHL, 7) KDD, 8) YMR,	B	A
	9) LJH, 10) HYN		

A: Reference drug. B: Test drug.

시험약으로 Slo-bid® 캡셀 (William H. Rorer 사, 테오필린 200 mg), 대조약으로 Asthcontin® 정 (현대약품, 아미노필린 225 mg, 테오필린으로 192.85 mg)을 사용하였으며, 정량용 시약으로 테오필린 표준품 (Sigma Chem., Co.) 및 기타 시중에서 구입한 특급 및 일급시약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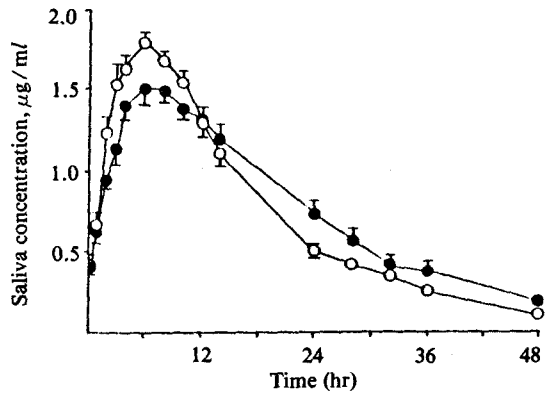
타액시료의 처리 및 정량에는 원심분리기 (Beckman Microfuge B) 및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 (Hewlett-Packard HP 1090)를 사용하였다.

#### 피험자의 선택 및 관리

공고를 통하여 과거에 소화기계, 간장, 신장 및 혈액질환의 병력이 없고 현재 타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는 지원자를 모집하여 그 중 10명을 선정하였다. 피험자는 모두 남자로서 나이는 21-27세, 평균체중은 63.4 kg, 평균신장은 174.6 cm 이었다. 모든 피험자에게는 본 실험의 목적, 취지, 내용, 방법, 예상되는 불편사항 및 부작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투약 2일 전부터는 xanthine계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커피, 코코아, 콜라, 초콜렛 등의 음식을 금하게 하였으며, 음주 및 격심한 운동도 삼가게 하였다. 또한 투약 전일에 충분한 수면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투약일 조식은 절식하게 하였다. 투약 후 각 피험자는 일정한 공간에서 시험 관리자의 감시하에 정상활동을 하게 하였으나 개별적인 음식물 섭취 및 격심한 운동 등은 금하였다. 식사 및 수면은 계획된 시간표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취하게 하였다.

#### 시험계획 및 약제 투여

Latin 방격법에 따른 2기 2제 교차시험으로 투약계획을 수립하고 10명의 피험자를 무작위로 두



**Figure 1—Saliva concentration profiles of the two dosage forms (mean  $\pm$  S.E.). n = 10.**

Key: ●, reference drug; ○, test drug

군으로 나누어 Table I의 시험계획표에 따라 투약하였다. 약제 투여량은 각 제제 공히 1정(캡셀)으로 하였으며 투여시에는 200 ml의 물과 함께 복용하도록 하였다.

#### 타액시료의 채취

투약 후 0.5, 1, 2, 3, 4, 6, 8, 10, 12, 14, 24, 28, 32, 36, 48 시간에 타액을 채취하였다. 매회 타액 채취시에는 구연산 소량을 구강에 넣어 타액 분비를 자극한 후 채취하였다. 채취한 타액은 즉시 냉동보관하였다.

#### 타액중 테오필린 농도의 정량

타액 중 테오필린 농도는 Chung 과 Shim의 방법을 써서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정량하였다. 타액 채취시 사용한 구연산은 정량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 실험결과 및 고찰

Fig.1은 대조약과 시험약의 타액 중 농도-시간 곡선이다. 두 제제 모두 투여 후 48시간까지 타액 중에서 테오필린이 검출되었으며 최고 타액 중 농도는 시험약이 대조약에 비해 다소 높았다. 이 타액중농도-시간 곡선하면적(AUC)을 사다리꼴 공식(trapezoidal rule)을 써서 계산하여 생체내 이용률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Table II는 각 피험자의 AUC 값이다. 이 값을 가지고 국립 보건안전 연구원 고시 제1호 생물학

**Table II—AUC( $\mu\text{g}\cdot\text{hr}/\text{ml}$ ) of Each Subject in Each Period.**

Group	Subject	Period I	Period II	Sum
1	1) KSH	24.5	28.3	52.8
	2) YHS	26.4	35.8	62.2
	3) YYH	27.7	30.5	58.2
	4) LKH	31.5	32.2	63.7
	5) CYJ	42.4	40.0	82.4
	Sum	152.5	166.8	319.3
2	6) KHL	37.1	38.3	75.4
	7) KDD	38.9	49.2	88.1
	8) YMR	34.2	37.4	71.6
	9) LJH	27.3	36.6	63.9
	10)HYH	40.1	49.5	89.6
	Sum	177.6	221.0	388.6
SUM	Period	330.1	377.8	707.9
	Drug	363.5	344.4	
	(A)	(B)		

A: referene drug. B: test drug.

**Table III—ANOVA<sup>1)</sup> Table.**

Variation sources	df <sup>2)</sup>	SS <sup>3)</sup>	MS <sup>4)</sup>	F <sup>5)</sup>
Between subjects	9	731.91	81.31	8.94
Between groups	1	240.13	240.13	3.91
Subject / Group	8	491.79	61.47	6.76
Intra subject variation				
Period	1	113.76	113.76	12.51
Drug	1	18.24	18.24	2.00
Residual	8	72.75	9.09	
Total variation	19	936.67		

<sup>1)</sup>Analysis of variance. <sup>2)</sup>Degree of freedom. <sup>3)</sup>Sum of squares. <sup>4)</sup>Mean squares. <sup>5)</sup>F-ratio

적 동등성 시험기준<sup>8)</sup>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계 검정하였다.

먼저 Table II에서 시험약의 평균 AUC는 대조약의 94.75%로서 두 제제의 AUC 차는 20%를 넘지 않았으므로 동등성 판정 기준의 전제조건을 만족시켰다. 따라서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다음의 분산분석을 행하였다.

Table III은 각 피험자의 AUC 값으로부터 계산한 분산분석표이다. 군간의 분산비  $F_G(1, 8)$ 는 3.91로서 F 분포표의 5.318보다 작으므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교차시험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었다. 또, 다음의 (1)식을 써서 비심도  $\lambda$ 를 계산한 결과  $\lambda=5.39$ 이었다.

$$\lambda(\alpha, 1-\beta, 2(n-1)) = \frac{\sqrt{n} \cdot \delta^*}{s} \quad (1)$$

$\alpha$ , 검출력  $1-\beta$ , 자유도  $\nu=2(n-1)$ 과 비심도  $\lambda$ 와의 관계로부터,  $\alpha=0.05$ ,  $\nu=3$ ,  $\lambda=5.39$ 일 때, 검출력  $1-\beta$ 를 비심도표에서 찾으면, 검출력  $1-\beta$ 는 0.99 이상이므로  $1-\beta$ 가 0.8보다 커야한다는 기준에 적합하였다. 또, 다음의 (2)식을 써서 최소 검출차  $\Delta$ 를 계산한 결과,  $\Delta=0.1188$ 로서,  $\Delta \leq 0.2$ 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적합하였다.

$$\Delta = \left( \frac{s \cdot \lambda(\alpha, 1-\beta, \nu)}{\sqrt{n}} \right) / \mu S \times 100 \quad (2)$$

생물학적 이용률의 차이의 신뢰의 한계는 다음 (3)식에 의하여 구하였다.

$$\hat{\delta} - t(\alpha, r) \times \frac{S}{\sqrt{n}} \leq \delta \leq \hat{\delta} + t(\alpha, \nu) \times \frac{S}{\sqrt{n}} \quad (3)$$

그 결과  $-1.19 \leq \delta \leq 5.02$ 였고, 이를 대조약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면  $-3.31\% \leq \delta \leq 13.81\%$ 로서, 생물학적 이용률의 차이가 20% 이내에 들어야 한다는 기준에 적합하였다.

이상 AUC를 생물학적 이용률의 지표로 하여 통계검정을 행한 결과, 두 제제는 생물학적 동등성 판정기준을 모두 만족하였으므로, 양적인 측면에서의 생물학적 이용률에 있어서 서로 동등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 결 론

1. 두 제제는 국립보건안전연구원 고시 제 1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준에 적합하여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2. 타액을 시료로 사용할 경우, 채취 및 처리가 간편하고, 보조인력, 기구 및 시험경비가 현저히 절약되므로 테오필린 제제의 경우 타액을 시료로 쓰는 것이 유리하며, 기타 혈장 중 농도와 타액중 농도간에 상관성이 확립되어 있는 약물이라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시료로서 타액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 헌

- 1) R. Koysooko, E.F. Ellis, G. Levy, Relation between theophylline concentration in plasma and saliva of man, *Clin. Pharmacol. Ther.*, **15**, 454 (1974).
- 2) V.P. Shah, S. Riegelman, GLC determination of theophylline in biological fluids, *J. Pharm. Sci.*, **63**, 1283 (1974).
- 3) R.D. Eney, E.O. Goldstein, Compliance of chronic asthmatics with oral administration of theophylline as measured by serum and salivary levels, *Pediatrics*, **57**, 513 (1974).
- 4) 박경호, 신현택, 최진석, 김 우, 김건일, 건강한 한국인에 대한 theophylline의 Pharmacokinetics, 제 35회 대한약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강연요지집, p.143 (1986).
- 5) 박숙진, 권혁노, 심창구, 이민화, 김신근, 타액중 농도 정량에 의한 테오필린의 간대사 클리어란스의 측정, 제 36회 대한약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강연요지집, p.146 (1987).
- 6) B.H. Chung, C.K. Shim, Dissolution of theophylline from sustained release dosage forms and correlation with saliva concentration, *J. Pharm. Sci.*, **76**, 784 (1987).
- 7) M. Gibaldi, D. Perrier, *Pharmacokinetics*, 2nd Ed., Marcel Dekker Inc., New York, 1982, pp.445-499.
- 8) 국립보건안전연구원 고시 제 1호,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준, 1988.